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
서 윤 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
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,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
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
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을
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안 제3조5항과 안 제4조3항5호를 신설하여
시가 주택정책 수립·추진 시와 시·시민·주택사업자에게
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고,
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요건인 “적정한 주거환경”과 시장이
주택사업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“주거환경개선” 내용에
범죄예방환경설계를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은 주택침입에 대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